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발 의 일 : 2007년 9월 11일

발의의원 : 홍문표(대표발의), 이인기, 김양수, 김명주, 김태홍, 김태년, 정병국, 김춘진, 이강두, 이군현, 고조흥, 유선호, 최규성, 신중식, 심재철, 김낙성

###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해서는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법」제16조에 의해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수액류 등의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하여

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어, 약국개설자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분업을 바탕으로한 의료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의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

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및 안 제85조제4항).

법률 제 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를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의약품 판매) ①~④(생 략) 〈신 설〉</p>	<p>제50조(의약품 판매)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u></p>
<p>제85조(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③(생 략)</p> <p>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u>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u>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85조(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 제5항에 따라 <u>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u> ----- -----</p> <p>⑤ (현행과 같음)</p>

